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1. 12 선고 2021가단525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1. 12. 22.

판 결 선 고 2022. 1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1997. 5. 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

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을 기초로 소유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2.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과 같다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인민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사이의 관계

원고의 부(父) 소외 망 E은 소외 망 F¹⁾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합니다.)을 매수하였는바,

원고는 위 E의 아들로서 E의 재산을 단독상속 받기로 한 상속인이고,

피고 G, H, I은 위 소외 망 F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/12 지분의 소유권자들이며, 피고 B, C,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/4 지분의 소유권자들입니다(갑 제1호증의 1. 임야대장, 갑 제1호증의 2. 임야대장, 갑 제1호증의 3. 토지대장 각 참고).
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바, 피고들은 먼저 그 각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2. 피고1 G, 피고2 H, 피고3 I에 대한 청구

원고의 선친인 소외 망 E은 소외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2006. 11. 23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28992호로 위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(갑 제2호증 소장).

원고는 위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쉽지 않은 사정이 있어서 예비적으로

1)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 명의자 J의 상속인(갑 제5호증, 제적등본 참조)
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었고, 위 법원에서는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/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(갑 제3호증 :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).

위 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(전주지방법원 2008나3902호)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.

즉, '원고가 위 F에게 2008. 10. 24.까지 25만원을 지급하고 F은 원고에게 2008. 10. 23.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/4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'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습니다(갑 제4호증 : 전주지방법원 조정조서).

위와같이 전주지방법원 2008나3902 사건의 확정된 조정결과에 따라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/4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했지만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러던 중, 2015. 11. 13. 위 F이 사망에 이르렀는데, F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K, 피고 H, 피고 I 등 3명이 있습니다(갑 제6호증 : 가족관계증명서).

그러므로, 피고 K, H, I은 위 F이 상속인들로서, 위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/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야 할 의무를 공동 상속하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/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원고에게 그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3. 피고4 B, 피고5 C, 피고6 D에 대한 청구

가.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

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285992호 사건의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.

즉, 위 판결에서는 “소의 땅 E과 원고는 1977. 4. 30.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땅 E과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.”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

다만 위 판결에 의하면, ‘원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,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만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F의 1/4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.’ 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.

위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는 1977. 4. 30.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·공연하게 사용·수익하였으므로,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9. 4. 30.이 경과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.

(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285992호 판결의 피고였던 위 F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1/4지분 이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1/4지분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일 뿐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이미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

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)

나. 원고의 피고4, 5, 6에 대한 청구

원고는 1977. 4. 30.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사용·수익하였으므로,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9. 4. 30.이 경과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.

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평온·공연하게 점유·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피고 4, 5, 6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, 피고들은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.

4. 결론

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,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별지>

부동산 목록

1. 군산시 임야 496㎡

1. 군산시 임야 694㎡

1. 군산시 전 450㎡

